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86
----------	-------

발의연월일 : 2026. 8. 14.

발 의 자 : 노종면 · 박선원 · 이주희
이건태 · 문금주 · 채현일
서영석 · 조승래 · 이정문
조계원 · 최민희 · 전용기
황정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등 일정한 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통행료 감면대상을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몰 규정까지 두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의 지속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 증대와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 확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

또한 재생에너지 및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5년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비중은 전체 자동차의 13.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법률상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 15조제2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을 “차량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차량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으로,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 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차</u> <u>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u> <u>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u>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 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② ----- ----- ----- ----- <u>차</u> <u>량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위하</u> <u>여 운행되는 차량과 「환경친</u> <u>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u> <u>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u> <u>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u> <u>는</u> ----- ----- <u>감면하여야 한다.</u>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